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20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9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2. 1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12. 21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코저 함.

3. 주요골자

○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규정(안 제2조)

-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을 정원조례에 통합

○ 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의 규정(안 제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근거에 의거 군 본청, 소속기관,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을 통합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8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